

의안번호	제 96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임영은, 박상돈,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
김국기, 원갑희

1. 개정이유

- 인용법령의 명칭을 정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명칭 정정(안 제6조)
 - 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기타 → 그 밖에
 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→ 제1항에 따른
 - 당해 → 해당
 - 호선하며 → 선출하며
 - 대하여 → 대해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선하며”를 “선출하며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개의”를 “개의(開議)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운용 및 관리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<u>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</p> <p>③ 도지사는 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보고 등) ① (생략)</p>	<p>제6조(운용 및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<u>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</p> <p>③ 도지사는 <u>제1항에</u>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보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<u>당해</u>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 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/p>	<p>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<u>해당</u>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 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/p>
<p>제1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</u>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선출</u>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</u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(開議)</u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③ (생략)</p> <p>제19조(실비보상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<u>대하여</u>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실비보상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<u>대해서</u>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</p>

현행	개정안
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
제24조(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) 정부는 남북교류·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·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명칭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